

# 세계각국 商標登錄 요건(完)

## 목 차

1. 오스트렐리아
2. 프랑스
3. 독 일
4. 영 국
5. 베네룩스(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 미국
7. 캐나다
8. 소련
9. 폴란드
10. 헝가리
11. 베트남
12. 일 본
13. 중 국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 12. 日 本

日本 商標法에 있어서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標章)으로서 業으로서의 商品을 생산, 가공, 증명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者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標章을 붙이는 행위 및 그것을 양도, 인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와 상품에 관한 광고, 定價表 또는 去來書類에 標章을 붙여서 展示 또는 頒布하는 행위를 使用으로 간주하고 있다(法 第2條).

일본 商標制度는 先出願主義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상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인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었을 때에는 最先의 상표등

록출원인 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며, 同日에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었을 때에는 상표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1의 商標登錄出願人 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가 있다.

商標登錄의 要件에 관해서는 法 第3條에 詳術하고 있는데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표 ;

(3) 그 상품의 產地, 販賣地, 品質, 原產地, 用途, 數量, 形狀, 價格 또는 생산, 가공이나 사용의 방법이나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標章만으로 된 상표 ;

(4) 흔한 姓 또는 名稱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는 標章만으로 된 상표 ;

(5) 극히 간단하고 또한 흔한 標章만으로 된 상표 및 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되는 상품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를 제외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며, 上記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상표일지라도 사용된 결과 出處를 식별할 수 있을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不登錄 要件에 해당하는 상표는 다음과 같다 ;

(1) 國旗, 菊花紋章, 勳章, 褒章 또는 外國의 國旗와 同一 또는 유사한 商標 ;

(2) 파리조약의 同盟國인 국가의 紋章, 기타 記章으로서 通商産業大臣이 지정하는 것과 同一 또는 유사한 상표 ;

(3) 國際聯合 기타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通商産業大臣이 지정하는 것과 同一 또는 유사한 상품 ;

(4) 적십자의 標章 또는 적십자나 제네바十字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 海外特許情報

(5)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기관, 공익에 관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

(6) 公共秩序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

(7) 他人의 초상, 성명, 명칭이나 著名한 雅號, 藝名, 筆名이나 이들의 저명한 略稱을 포함한 상표(단, 그 他人의 승락을 얻은 것은 제외);

(8) 政府 등 또는 이외의 者가 개최하는 博覽會로서 特許廳長官이 지정하는 것 또는 외국에서 그 정부 등이나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최하는 國際的博覽會의 상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을 가진 상표(단, 그 賞을 받은 者가 상표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

(9) 他人의 業務에 관련되는 상품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이와 類似한 상표로서 그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10) 당해 商標登錄出願日 이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관련되는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商標登錄에 관련되는 지정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11) 他人의 登錄防護標章과 同一한 상표로서 그 防護商標登錄에 관련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12) 商標權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他人의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商標權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13) 種苗法에 따라 品種登錄을 받은 品種의 명칭과 同一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品種의 種苗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14)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

商標權의 존속기간은 設定登錄日로부터 10年이며, 更新登錄은 前述한 不登錄要件에 해당하고 갱신등록출원전 3년 이내에 日本內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必要구비서류를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대하여 專用使用權 및 通商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으며 다만, 法第4條 ②項 (公益團體 등의 상표등록출원)에 규정된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商標權에 대해서는 設定할 수 없다.

先使用에 의한 商標의 사용을 하는 權利로서 타인의 商標登錄出願時 부터 日本國內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그 商品登錄出願에 관련된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온 결과, 그 商標登錄出願時 현재로 그 商標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需要者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法第32條에 의해 그 者는 계속해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그 商標의 사용을 할 權利가 있으며 당해 업무를 승계한 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商標登錄 取消事由로는 계속해서 3년 이상 日本國內에서 登錄商標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登錄商標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 또는 타인의 業務와 관련되는 商品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을 때 및 商標登錄出願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에 관한 권리를 가진 者의 승락을 얻지 않고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當該商標登錄出願日 前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者에 의하여 등록된 것일 때에는 取消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商標登錄 無効事由에 관해서는 法第46條에 詳述하고 있는데 그 상표등록이 상표등록의 요건 및 不登錄要件, 先出願主義, 取消要件 등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 條約에 위반하여 登錄되었을 때, 權利를 승계받지 않는 者의 등록출원에 의하여 되었을 때, 商標登錄이 된 후 그 商標權者가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者로 되었을 때에는 商標登錄 無効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商標權의 移轉에 관해서는 法第24條에 규정

하고 있으며, 그 指定商品 2이상 있을 때는 지정상품마다 분할해서 할 수 있지만, 分割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그 분할코자 하는 지정상품 이외의 指定商品중 어느 것과 유사할 때는 그렇지 아니며, 聯合商標에 관련되는 商標權은 분리해서 移轉할 수 없다.

商標權을 양수함에는 通商産業省令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要旨을 日刊新聞에 公告해야 하며 그 公告日로부터 30일 이내에 移轉할 수 없다.

商標權을 양수함에는 通商産業省令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要旨을 日刊新聞에 公告해야 하며 그 公告日로부터 30일 이내에 移轉登錄을 해야 하고, 공익단체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商標登錄出願으로서 法 第4條 ②項의 규정에 관련되는 商標權은 讓渡 및 移轉할 수 없다.

### 13. 中 國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法은 어떤 상표의 獨占權을 얻고자 하는 法的登錄 기업, 기관, 개인생산자 및 商人은 누구나 商標局에 당해 상표의 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商標登錄出願 및 商標에 관한 기타 사항을 취급하는 外國人 혹은 外國企業은 「중국 商標法 實施規則」 第29條에 따라 중국 國際貿易促進委員會의 商標代理處에 그 代理를 委任하여 出願해야 한다.

各 商標登錄出願은 商標法에 따라 方式審査 및 實體審査를 받으며 商標의 拒絶이나 異議決定에 불복하는 이해당사자는 商標再審委員會에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商標의 不登錄要件에 관하여는 法 第8條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商標에 사용하는 文字, 圖形 혹은 이들의 組合은 識別하기 쉽도록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商標로서 사용할 수 없다 ;

(1) 중국의 國名, 國章, 軍旗, 勳章과 同一 또는 유사한 것 ;

(2) 외국의 國名, 國旗, 國章, 軍旗와 同一 또는 유사한 것 ;

(3) 정부간 국제조직의 旗, 勳章, 名稱과 同一 또는 유사한 것 ;

(4) 적십자, 붉은 新月의 標章, 名稱과 同一 또는 유사한 것 ;

(5) 당해상품의 보통명칭과 圖形 ;

(6)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 주된 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

(7) 民族을 모욕할 위험성이 있는 것 ;

(8) 과장된 선전, 기만성이 있는 것 ;

(9) 사회주의적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登錄商標의 存續期間은 등록의 許可가 있는 날로부터 起산하여 10年間이며, 更新登錄出願은 기간만료일 前 6개월 이내에 更新登錄을 出願함으로써 10年間 更新된다.

登錄商標의 取消要件에 관하여는 法 第30條, 31條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商標權者가 당해 등록상표의 文字, 圖形, 姓名, 住所, 또는 기타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등록상표를 임의로 他人에게 양도할 경우, 登錄商標를 계속하여 3年동안 使用을 하지 않을 경우 및 品質을 위조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때에는 登錄商標는 取消된다.

權利의 移轉에 관하여는 法 第25條 내지 26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登錄商標를 讓渡할 경우 讓渡人과 讓受人은 공동으로 商標局에 申請을 해야 하며 讓受人은 그 登錄商標를 使用한 商品의 品質을 保證해야 한다. <♣>